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 규모를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946호, 2025. 4. 22. 공포, 20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

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제1호 중 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, “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가입하여야”를 “가입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중 “등의”를 “등 구호(救護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(救護)”를 “예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착용하여야”를 “착용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체적인 근무방법”을 “근무방법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고시하여야”를 “고시해야”로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조제2항”을 “제11조제3항”으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	법 제25조 제2항제1호	20만원	50만원	100만원

나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1호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다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2호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라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마.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 제2항제2호	20만원		
바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4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사.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	법 제25조 제2항제3호	30만원		
아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5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·기능 등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·기능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삭제	⑤ ----- -----.
⑤ 중앙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	1. ----- ----- <u>기본계획</u> ----- ----- ----- -- <u>시행계획</u> ----- ----- --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<u>기본계획</u>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<u>시행계획</u> 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사항	2. <u>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</u> ----- --
2. <u>기본계획</u> 의 변경에 관한 사항	3. ~ 5. (현행과 같음)
3. ~ 5. (생략)	제5조(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)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(이하 “보험등”이라 한다)에 <u>가입하여야</u>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(水上)이나 수중(水中)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.
	제5조(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) ----- ----- ----- <u>가</u> <u>입해야</u> ----- ----- ----- ---

제9조(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)

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

6.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(救護)에 관한 업무

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
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, 근무일지의 작성,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
①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)

①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등 구호(救護) -----

6. ----- 예방-----

② -----

----- 착용해야 -----
--.

③ ----- 근무방법-----

-----.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

② (생 략)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<u>고시하여야</u> 한다. 제1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양경찰청장(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</u> <u>시해야</u> ----. 제1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 -----제11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439